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9600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박세윤, 신석중, 이상수	
피	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	
		담당변호사 배기명, 강호정, 박상수, 백승학	
환	송 전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0. 29. 선고 2019가합7904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0나23598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94831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6.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2,42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회생채권확정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2,420,000,000원임을 확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선택적으로, 소외 C(G생)과 각자} 원고에게 금 2,4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대전지방법원 2019. 9. 9.자 2019회합5017 회생채권 시·부인명세서의 신고번호 6번 채권)은 아래 기재 해당 금원임을 확정한다.

[손해배상채권 원금 2,4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이 유

1. 기초 사실

가. 2019. 1. 31.자 합의의 체결 경위

- 1) 원고는 시흥시 H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 전문기업으로 완성차 회사인 D 주식

회사 및 E 주식회사(이하 'D·E'라 한다)와 직접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D·E에 차체, 프레임 부품을 공급하는 1차 협력업체이다. 피고는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 및 판매업체로, 2016. 9. 6.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품거래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및 검사구 등(이하 '이 사건 금형 등'이라 한다)을 대여 받아 생산한 부품을 원고에게 공급하는 2차 협력업체이다.

「부품거래 기본계약」

제6조 (계약의 해제, 해지)

- ② 갑(원고,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J, 이하 같다)과의 기본계약 내지 개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3. 을의 기술, 생산,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③ 제2항의 경우 갑이 을에게 구두로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때,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을 발송한 때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제19조 (금형 등의 양도 및 대여)

- ① 갑은 발주부품의 품질유지 및 개선 등에 필요하거나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에게 발주부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금형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 ④ 을은 갑으로부터 금형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갑에게 제공받을 금형에 대한 대여자산명세서 및 갑의 소유임을 입증하는 공증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6조 (단가)

- ③ 계약기간 중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변경되어 단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갑과 을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 ⑤ 이전 단가와 일방이 원하는 단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장기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가조정

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아이템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제40조 (대여자산)

- ② 갑은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대여자산을 갑이 지정한 장소로 이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갑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 ③ 갑은 을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여자산을 갑이 지정한 장소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여자산을 수거할 수 있고, 을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9. 무렵부터 부품의 단가조정, 납품지연, 품질관리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11. 9. 피고에게 부품 공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금형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원고에 대하여 ① '품질문제가 발생한 이상 추가 생산할 수 없으니 즉시 생산을 중단하겠다. 속히 금형을 이관하여 가라. 다만, ㉠ 현재의 제품가는 가단가이므로 추후 가격 결정 시 정산, ㉡ 현재 운용 중인 팔레트는 피고의 자산이므로, 최초 피고의 구입가격으로 원고가 전량 매입, ㉢ 금형 이관 이후 금형 상태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동의해야만 금형 이관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메일을 보내고, ② C은 2018. 10. 8. 원고로부터 '현재 정산 중인 부품 단가는 이미 정단가이고, 현재 운용 중인 팔레트의 제작비용 중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나머지 투자비를 지급하고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수차례 협의를 계속하였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원고 부품구매팀장 K에게 자신의 요구사항과 배차 관련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라인만 중단되겠어? A 전체 공장 불나지."라고 말하거나, ③ C은 2018. 11. 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본계약 제6조에 따른 거래계약해지 통지를 받고, 그 무렵부터 2018. 11. 23.경까지 사이에 금형 등의 이관절차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K과 부품구매팀 L에게 '나는 라인을 잡지 않는다. 억울하면

불을 질렀으면 질렀지. 머리 숙여 사죄 안하면 그럼 내가 금형 잡고 흔들 거다. 주는 과정에서 조건 항목이 11가지가 있다. 하나하나 충족을 해줘야 원만히 해결된다. 이제 는 강 건너 갔으니까, 자금 준비하시고. 4명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31일까지 납품할 거만 딱 생산하고 끝이야.'라고 이야기하는 등, 정산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금형 등의 반환을 거부하고 부품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3) 원고가 2018. 12.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형 등에 대한 동산인도단행가처분(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카합5124)을 신청하자 C은 원고의 구매본부장 F에게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하면 부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8. 12. 17.부터 연락을 받지 않고 납품을 거부하여, 원고의 시화공장 IG 차종의 생산라인이 일정 시간 중단되게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2. 17. 이 사건 금형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법률적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C의 요구를 받아들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건 금형 등과 관련하여 동산인도단행가처분 등 법률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4) C은 2019. 1. 24. 무렵 원고에게 정산금과 투자비용 및 손실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22억 원에서 27억 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그 세부내역이나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24억 2,000만 원으로 정산금 요구금액을 낮추었고, 2019. 1. 25. 재차 부품의 공급을 지연하였다.

5) 원고는 2019. 1. 31. C과 피고에게 투자금과 손실비용 등으로 24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형 등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

의서와 각서를 작성하는 등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2019. 1. 31.)」

제2조 합의 내용

1) 합의금액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세	비 고
물품대금 정산금, 투자비 외			
손실비용 외			
영업손실비용 외			
기타, 위로금 외			
합계	₩2,200,000,000	₩220,000,000	₩2,420,000,000

- 2) 포괄 합의에 의한 금액으로 금액을 구분하여 명기하지 않는다.
- 3) 을의 합의서 작성 이후 추가 부품 공급에 따른 물품대는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 2019년 3월분까지 : 갑의 정기결제방식
- 2019년 4월분 + 이관 시, 안전 재고 확보분 : 금형 이관 전 지급

제3조 합의금의 지급방법

- 4) 갑은 갑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권의 만기일 도래 이전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을이 보관하고 있는 동일 제품에 대한 금형의 제작 등 이원화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5) 을은 만기일에 어음, 채권의 만기일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부품 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면 보관하고 있는 금형을 즉시 반환한다.
- 6) 갑이 위 3, 4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2조 제1항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배상한다.

제4조 업무 관련 소통 부족으로 인한 오해의 소명

- 1) 품질관리 M
- 2) 금형개발 N, O
- 3) 부품구매 K
- 4) 시화공장 물류팀 P, Q
- 등 6인은 을의 회사에서 공개 소명한다.

제6조 이관 일정 및 방법

- 5) 4조의 모든 조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금형을 이관하지 않는다.
- 6) 갑이 3조의 모든 조항이 성실히 이행 하였음에도 을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금형의 이관을 거부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2조1항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또한 이로 인한 손해금을 별도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유지

- 2) 갑 또는 갑의 임직원이 본건 합의에 관련한 전후의 과정이나 합의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 누설 또는 을의 영업 활동에 손해가 될 수 있는 언행(사소한 험담 포함)이나 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위 2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2조 제1항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특약

- 1) 갑은 본건 합의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본 합의의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며 을과 을의 임직원을 상대로 민, 형사소송이나(각종 가처분, 반환청구 등 포함)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위반 시 제2조 제1항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배상한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거나 접수 후 취하하여도 이의제기한 것으로 판단한다.
경찰, 혹은 검찰에 고소, 고발장 접수 시 또는 이를 취하하여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한다.
- 2) 갑과 을은 본 합의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각서를 작성한다.

「이 사건 각서 (2019. 1. 31.)」

피해자 회사는

- 1) 합의서 서명 이후 J 및 임직원을 피고로 하는 소송(각종 가처분 포함) 민, 형사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不提訴原則)
- 2) 피해자 회사 및 임직원이 2019. 1. 31. 합의에 관련한 내용 및 합의 과정을 제3자에게 제공, 누설 또는 J의 영업활동에 손해가 될 수 있는 언행이나 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사소한 험담 포함하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녹음, 녹화물도 증거로 인정, 심신 미약 상태의 행위도 증거로 인정)

3) 어음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만기일 도래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 피사취계 등을 하지 않는다.

4) 어음 또는 채권의 만기일 도래 이전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을이 보관하고 있는 금형의 제작 등 이원화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위 4개항 중 1개항이라도 위반 시 각 항목별 각 금 오십억 원씩 J에게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합의에는 원고가 피고와 그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위 합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합의에 첨부하여 작성된 각서에는 원고가 피고와 그 임직원을 상대로 소송 등(각종 가처분 포함) 민·형사적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합의에 관련한 내용 및 합의과정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사소한 혐담을 포함하여 피고의 영업활동에 손해가 될 수 있는 언행이나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이 사건 금형 등을 별도로 제작하는 등 이원화를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5,000,000,000원씩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C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9. 1. 31. 외상매출금 담보부 채권(결제일자: 2019. 2. 28.) 770,000,000원, 2019. 2. 28. 외상매출금 담보부 채권(결제일자: 2019. 4. 1.) 620,000,000원, 2019. 2. 28. 전자어음(만기: 2019. 3. 31.) 150,000,000원, 2019. 4. 3. 외상매출금 담보부 채권(결제일자: 2019. 4. 30.) 880,000,000원을 발행 및 교부하도록 하여, 피고는 그 무렵 합계 2,420,000,000원(= 770,000,000원 + 620,000,000원 + 150,000,000원 + 880,000,000원) 상당의 현금화를 하는 등 아래의 표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금액 2,4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지급일자	금액(단위:원)
1	2019. 2. 28.	770,000,000
2	2019. 4. 1.	620,000,000
3	2019. 3. 31.	150,000,000
4	2019. 4. 30.	880,000,000
합계		2,420,000,000

7) 원고는 2019. 5. 10.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형 등 잔여물을 모두 반환받았다.

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 진행 경과

1)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9. 6. 26. 피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이하 '이 사건 회생법원'이라고 한다) 2019회합501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회생법원은 C을 피고의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한 손해배상채권 2,645,808,000원 원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전 이자 및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후 이자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C은 원고가 신고한 회생채권을 모두 부인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에서 정해진 회생채권의 조사기간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9. 9. 19. 이 사건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4) 피고는 2022. 11. 22. 유일한 적극재산인 충남 예산군 R 토지 24,400㎡ 및 그 지상 건물 6,225㎡를 S에게 8,000,000,000원에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법원에 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매도하고 2023. 1. 3.경 매매대금 8,000,000,000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5) 피고는 2023. 1. 10. 이 사건 회생법원에 회생절차조기 종결신청을 하면서 위

매도대금 8,000,000,000원으로 회생채무 6,499,536,376원을 변제하고, 2023. 1. 6. 기준으로 잔액 1,500,463,624원을 피고가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회생채권 변제이행을 이 사건 회생법원에 보고하였다.

6) 이 사건 회생법원은 2023. 2. 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C은 원고의 구매본부장 F 등을 공갈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합계 24억 2,000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법원은 2022. 7. 18.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단가 등 관련 정산금채권 등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금형 등을 유치한 것으로서 그 반환거부가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합의서의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C에 대하여 무죄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합136)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3. 7. 18. C이 위법하게 이 사건 금형 등 중 잔여물을 보유하면서 부품의 납품을 거부한 것은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를 통하여 피고로 하여금 2018. 12. 17.자 합의서, 이 사건 합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가처분신청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포기하도록 하며, 사후 일체 다툼의 여지를 봉쇄하기 위하여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해 놓은 것은 정산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방법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보아 C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2노279, 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4, 36 내지 5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 14, 16 내지 25, 30, 32 내지 37호증

의 각 기재, 기록상 분명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피고의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고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예비적으로 변경하면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한 2,420,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이라고 한다)채권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이 원고에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면책되지 아니하는 채권이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하는 도중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48조).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된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면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제1호, 제168조)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의 적법한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위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법 제172조 제1항)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이의자를 상대로 회생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 참조)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4다201871 판결 참조).

2)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에서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4호에서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251조에서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되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140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판단

살피건대, 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회생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이행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중복하여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만일 회생채권에 대하여 즉시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 선고가 가능할

경우 이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 회생계획에 미확정 채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는 지급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회생채권자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변제할 채무액이 '미정'으로 기재된 회생채권자표와 그 변제할 금액을 확정된 확인판결이 결합되어 집행권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2019. 6. 26.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신고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회생채권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140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부당이득금 채권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책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파산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채무자회생법 제625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당이득금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2020. 12. 18.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에 의하여 청구하는 채권은 면책되고,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되고(채무자회생법 제253조),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그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채무자회생법 제175조),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되므로(채무자회생법 제255조),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에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그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채무자회생법 제175조),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 84424, 8443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법리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회생채권확정청구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제1호)과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제2호),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제3호), 회생절차참가의 비용(제4호)을 회생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경우 그 수계한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73조, 제172조 제1항). 한편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확정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계속 중이었다가 절차개시에 의하여 중단된 소
송을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수계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되고, 이와 같이 실권된 회생채권은 그 후 회생절차가 폐
지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그 확정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며, 회생채권 확정의 소에서 회생채권의 신고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
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다44354(본소),2007다44361(반소)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건대, 회생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의 회생채
권으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원금에 대해서만 채권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
와 같고, 달리 원고가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음을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2019. 5. 1. 이후의 지연손해금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
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
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

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2) 판단

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사건 합의 관련 형사사건에서 C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갑 제5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루어진 아래 (1) 내지 (3)과 같은 사실판단이 잘못되어 이 사건에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 금액 상당액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금형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C의 행위가 정산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방법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품 생산에 필요한 이 사건 금형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부품 공급을 지연하거나 중단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산금 세부내역에 대해 검토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피고에게 C로부터 요구받은

2,420,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가처분이나 민·형사소송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포기하며 원고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배상액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위법한 해약의 고지로 말미암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 금액 상당액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

(가) 피고는, 원고와의 부품공급대금 미정산 금액 1,734,525,915원은 2019. 1.경 T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작성한 실제원가계산 용역서(을 제26호증, 이하 '이 사건 용역보고서'라고 한다)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고, 위 1,734,525,915원에 이윤을 가산한 1,955,170,066원 및 그 외 미정산 금액의 합계가 3,354,224,131원이므로 이 사건 합의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위 1,734,525,915원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① 이 사건 용역보고서는 피고가 제시한 자료에 근거해서 작성되었고,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에 대해서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 ②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서 나타난 피고의 전체 거래 중 원고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70~80%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용역보고서에는 피고의 2018년 전체 원가구성 내역 중 93%에 해당하는 금액 및 2018년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 공급하는 일부 부품의 원가에 배분하였다는 점, ③ 이 사건 용역보고서는 일부 부품에 한하여 개당 원가를 도출하였을 뿐, 나머지 부품의 개당 원가는 다루고 있지 않거나 부품에 따라 임의의 금액을 단가로 산출한 점, ④ 이 사건 용역보고서에 따른 단가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한 것임에도, C은 이 사건 기본계약이 체결된 이래 2018. 12. 31.까지 납품한 모든 물량에 대하여 해당 단가를 일괄 계산하여 산출한 점, ⑤ 원고가 2017. 6. 30.부터 2018. 12. 31.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피고에게 지급한 총 대금액과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명령신청서(갑 제40호증의

1)에 기재된 2018. 12. 31.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 금액에 비하여 매우 과다하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믿고 어렵고 피고가 주장하는 1,734,525,915원은 매우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

(다) 그 외의 미정산 금액 1,399,054,065원 부분과 관련하여 위 돈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229,766,960원 부분 중, ① 피고가 납품은 하였으나 원고의 실적으로 대금 정산된 금액 95,316,512원 부분은 이미 위 1,734,525,915원 부분에 포함된 내역이거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명령신청서에 기재된 2018. 12. 31.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 금액 32,299,360원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정산이 전혀 되지 않은 납품수량에 대한 미정산 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부품 제작에 투입된 인건비, 설비사용비용, 운반비, 재료비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767,566,960원 부분은 설령 그 금액이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가에 배분되어 위 1,734,525,915원 부분에 포함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어서 중복 청구의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피고가 원고에 대한 부품 납품을 위하여 도입한 특정 기계, 장비, 설비 등의 투자비용 462,200,000원 부분은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본계약 제41조, 제42조에 따라 투자자산, 계약 만족을 위해 신작 또는 개선한 설비의 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투자자산, 신작 또는 개선한 설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나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것을 대가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시 및 그 이후에도 투자자산, 신작 또는 개선한 설비의 구체적 내역 및 그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게 제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아니하였고, 특정 투자자산, 신작 또는 개선한 설비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거나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합의금액 산정에 있어서 위 투자비용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라) 이상과 같이, 피고가 정산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3,059,609,387원은 현저히 과장되거나 또는 중복 청구의 가능성이 있는 것 또는 합의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비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윤을 가산하여 주장하는 3,354,224,131원은 위 이윤을 가산하기 전의 금액이 정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에게 이 사건 금형 등에 대한 유치권이 있는지 여부

유치권 배제의 특약은 묵시적 약정에 의해서도 가능하고(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37176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62647 판결 등 참조), ① 생산라인 중단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가능성에 관한 계약 당사자들의 상호 인식(이 사건 기본계약 제21조 제5항, 제24조 제2항), ② 금형 및 대여자산에 관한 소유권 확인 및 처분 금지를 정한 규정 내용(이 사건 기본계약 제19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5항, 제6항, 금형·검사구 보관증 제1항, 제2항, 제3항), ③ 설비, 아이템, 대여자산에 관한 원고의 이전, 반환, 수거, 조치권을 인정한 규정 내용(이 사건 기본계약 제24조 제5항, 제36조 제5항, 제40조 제2항, 제3항, 금형·검사구 보관증 제4항, 제5항), ④ 원고의 이전, 수거권 행사에 관한 면책을 인정한 규정 내용(이 사건 기본계약 제24조 제6항, 제40조 제4항), ⑤ 정산의 완료 시까지 계약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규정 내용(이 사건 기본계약 제48조 제1항 제3호)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기본계약 체결 당시 대여자산인 이 사건 금형 등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① 피고에게는 이 사건 금형 등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금형 등 잔여물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피고가 부품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 원고의 생산라인 및 D·E의 생산라인이 연쇄적으로 중단됨으로써 원고가 D·E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금형 등 중 잔여물을 보유하면서 부품 납품을 거부하는 행위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한다는 점,

② 원고가 동산인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 사건 금형 등 중 잔여물을 보유한 채로 납품 중단을 고지하고 실제 납품을 중단하여 원고의 생산라인이 정지되기까지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생산라인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라인 결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가처분신청 및 금형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18. 12. 17. 자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원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포기시켰다는 점, ③ 피고는 원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금형 등 중 잔여물을 그대로 보유한 채 재차 부품 공급을 지연시키면서 원고에게 정산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기에 원고는 생산라인의 중단을 막기 위하여 피고의 정산금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④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합의금액 2,420,000,000원 상당액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의 소 제기, 합의 내용 누설, 어음 또는 채권의 미지급, 금형의 이원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 항목별로 5,000,000,000원이라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등 이 사건 합의가 정당한 협상을 통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의 행위는 정산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방법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취소의 의사표시 및 도달

원고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2019. 6. 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민법 제110조에 따른 취소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합의는 취소되었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합의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합의금 2,420,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2,42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피고에 대한 위 2,42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존재한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 관리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전부터 이미 계속 중이던 이 사건 소송에서 위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2,420,000,000원이 된다.

다. 피고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또는 법정추인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이 사건 합의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강박의 상황이 해소된 2019. 5. 8.경에는 원, 피고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새로운 합의에 이르렀고, 그 합의에 따라 원고가 2019. 1. 31.자 합의서와 각서를 첨부하여 위 합의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고 한다)을 피고 측에 보내고, 이 사건 합의에 관한 일부 이행을 하였으므로, 이는 원고가 강박

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전에 이 사건 합의를 추인 또는 법정추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을 제10, 38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5. 8. 피고에게 "당사의 사정으로 첨부 합의서 제4조 등의 일부 사항이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부득이 귀사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거래종료에 따른 합당한 금전의 정산 및 SQ 주관장사 이관 등은 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사는 귀사와 2019년 1월 31자로 체결한 합의서 및 각서의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공문을 송부한 사실, 원고가 2019.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공급된 부품대금의 정산으로서 합계 209,302,797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거래기간 중 결제대금으로 지급 받은 어음 및 매출채권 중 결제기일 60일 초과기일에 대한 할인료로서 2019. 11. 14. 355,984원을, 2020. 2. 17. 3,063,401원을, 2020. 3. 13. 467,002원을 피고로부터 각 지급 받은 사실, 피고가 2021. 6. 28. 원고에게 SQ 주관장사를 원고에서 주식회사 U으로 변경해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하고 원고의 직원 V가 '거래 종료 후 1년간 신규거래 1차 협력사가 없을 시 인증 자동취소 처리'된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처리 절차에 관한 안내에 관한 첨부파일을 포함하여 이메일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 자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 추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 298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 증인 W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기 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이 사건 합의를 추인하였거나 법정추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합의서 제6조 제5항은 제4조에 따라 원고 직원 6명이 피고에서 업무 관련 소통 부족으로 인한 오해의 공개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금형을 이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19. 5. 8.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제4조 등 일부사항의 미 이행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이 사건 합의서 및 각서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은 이미 피고에게 24억 2,000만 원 상당의 채권과 어음을 발행 및 교부하고도 그때까지 반환받지 못한 이 사건 금형 등 중 잔여물을 최종적으로 반환받지 못하게 될 상황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합의서 및 각서가 진정으로 유효함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때까지 강박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위 (1)항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제4조에 따른 원고 직원 6명이 요구받은 공개 소명을 C이 원하는 수준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형 등 잔여물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위 원고 직원 6명이 위 소명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W을 통하여 C에게 일부 조정을 부탁하였고 이에 C이 위와 같은 부탁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문을 요구하였다면, 설령 위 공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W이 C에게 먼저 '2019. 1. 31.자 이 사건 합의서 및 각서의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넣기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마치 이 사건 공문의 기재 내용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는 것과 같은 정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할 당시에 이미 원고가 강박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강박에 기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W도 이 법원에서 이 사건 합의서 내용 중 다른 사항은 다 이행하였으나 제 4조에 따른 소명과 관련된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문을 발송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단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거액의 합의금과 관련한 이 사건 합의의 주된 내용에 관하여 추인하는 의사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이 사건 합의서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이 사건 금형 등을 이관할 때까지 추가 발생한 물품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금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2019.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공급된 부품대금의 정산으로서 합계 209,302,797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이 사건 금형 등 잔여물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아직 강박 상태에서 해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설령 원고가 강박 상태가 해소된 뒤 위 (4)항과 같이 추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법정추인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란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한 채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58438 판결 참조), 이 사건 금형 등을 이관하기 전까지 부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원고가 추가로 발주한 부품을 피고로부터 공급받았다면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이 사건 합의 내용과 관계없이 쌍무계약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이행행위이므로, 이 사건 합의 이후에 위와 같은 추가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특히 법정추인 사유로서 이 사건 합의의 주된 내용인 2,4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를 일부 이행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에 어음 및 매출채권 중 결제기일 60일 초과기일에 대한 할인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부분, 원고의 직원 V가 피고에게 주관장사 신규평가 처리 절차에 관한 안내를 해준 부분 등은 모두 2019. 6. 24.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이미 취소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들로서, 그것이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추인의 의사표시 또는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 볼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이 될 수 없다.

(7) 설령 피고가 이미 취소된 법률행위에 대하여 무효행위의 추인을 주장하는 취지로 선행하더라도, 위와 같이 취소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9. 6. 24. 이후에 피고로부터 약 3,886,387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합의 금액 2,4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무효임을 알고도 다시 이 사건 합의와 동일한 내용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추인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한편 V의 위 답변 취지는 '피고가 주관장사 변경 요청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낸 2021. 6. 28. 시점에는 이미 원·피고의 계약이 종료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자동으로 인증 취소가 되었으니 피고가 독자적으로 신규 1차 협력업체와 인증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그러한 답변행위가 뜻하는 바가 이 사건 합의 사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와 동일한 내용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추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 중 2019. 5. 1. 이후의 지연손해금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

지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정택

판사 유소영

판사 김기현